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3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32.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33. 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제38조제1항 본문 중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0명”을 “21명”로 한다.

제9장(제4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제42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40”을 “345”로, 일반직 계 “339”를 “344”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328”을 “333”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촌지원국) ① (생략)	제11조(농촌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농촌자원 활용과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u>	11. <u>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u>
12. ~ 30. (생략)	12. ~ 30. (현행과 같음)
<u><신 설></u>	31. <u>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 급 및 지원</u>
<u><신 설></u>	32. <u>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 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u>
<u><신 설></u>	33. <u>농업인 안전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 영</u>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 <u>정원</u> ----- ----- ----- ----- ----- ----- -----.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
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
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
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
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

② -----

-----.

----- 21명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
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

<u>제10장 한시정원</u> <u>제42조(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u>	<u>품부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삭 제></u>
---	--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0</u>	<u>345</u>	+5
.	.	.	
.	.	.	
일반직 계	<u>339</u>	<u>344</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8</u>	<u>333</u>	+5
.	.	.	

[별표 3]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1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농촌지원국 1개 과	3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